

## 保險約款의 醫學的 檢討 (II)

金炳極 \* · 孫泰休 \*\* · 權泰喜 \*\*\*

尹秉鶴 \*\*\*\* · 金剛石 \*\*\*\*\* · 馬順子 \*\*\*\*\*

### Medical Approach to the Grades of Partial Disability and Disability under Insurance Policy (II)

Kim, Byung - Kuck, M.D.\* · Son, Tae Hyu, M.D.\*\* · Kwon, Tae Hee M.D.\*\*\*  
Yoon, Byong Hak, M.D.\*\*\*\* Kim, Kang Sueck, M.D.\*\*\*\*\* · Mah, Soon Cha, M.D.\*\*\*\*\*

生命保險의 大衆化에 따라 災害保障特約 販賣  
가 擴大되고 또 交通事故, 自殺 等 事故가 增加  
一路에 있어 高度障害(廢疾) 障害關係 約款을 醫  
學的 立場에서 再檢討하고 實務面에서 잘 比較되  
는 勞動災害補賞保險과의 差異點을 輒하기 為  
障害等級 4, 5, 6 級에서 各各 3 項씩 9 個項을 新

設하므로써 保障의 幅을 넓히고 또 保障을 받을  
수 있는 事故內容을 韓國標準疾病死因分類表에  
의해 明文化하였다.

또한 約款上 表記된 醫學的 用語는 契約者나  
被保險者가 解得하기 쉽게 日常的인 用語 또는  
註釋을 加하였다.

\* 大韓生命保險株式會社  
*Daehan Life Insurance Co. Ltd.*  
\*\* 第一生命保險株式會社  
*Jae Il Life Insurance Co. Ltd.*  
\*\*\*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  
*Dong Bang Life Insurance Co. Ltd.*

\*\*\*\* 興國生命保險株式會社  
*Hung Kuk Life Insurance Co. Ltd.*  
\*\*\*\*\* 大韓教育保險株式會社  
*Dae Han Kyouk Life Insurance Co. Ltd.*  
\*\*\*\*\* 東亞生命保險株式會社  
*Dong Ah Life Insurance Co. Ltd.*

현 행	개 정(안)	비 고
불의의 사고 분류표 가.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 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 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불의의 사고 분류표 가.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란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 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 인은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 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에 의한 것이다.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상태를 명문화 분류항목의 근거명 기

Kim, Byung Kuck, et al.: Medical Approach to the Grades of Partial Disability and  
Disability under Insurance Policy (II)

분류항목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교통 기관사고 5. 수상교통 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② 질병의 진단치료의 목적	1. 철도에 의한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5. 수상 교통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E 800~E 807 E 810~E 819 E 820~E 825 E 826~E 829 E 830~E 835 E 840~E 845 E 850~E 858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보조분류” 번호신설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세제 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 ② 살모넬라성 (Salmonella 성) 식중독 ③ 세균성 (포도상구균성 Botulinus 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 이거나 대장염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 증기에 의한 불의의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세제 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 ② 살모넬라성 (salmonella 성) 식중독 ③ 세균성 (포도당구균성 Botulinus 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E 860~E 869	“보조분류”에 의거 8, 9 항을 합하여 1 개항으로 함
9. 까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9. 불의의 추락  10.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80~E 888 E 890~E899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과도의 고온 ② 고압 및 저압 ③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 장해 ④ 기아, 갈 불량환경폭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11.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과도의 고온 및 저온 ② 고기압, 저기압 및 기압의 변화 ③ 여행 및 운동 ④ 기아(굶주림) 갈증, 불량환경에의 노출 및 방치증의 기아(굶주림), 갈증	E 900~E 909 (E 900~E 901) ( E 902) ( E 903) (E 904)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12.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E 916~E 928 (E 927)	

金炳極 外 : 保險約款의 醫學的 檢討 (II)

① 과로 및 격동중의 과로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연하장 해 또는 정신신경장해가 있는자 의 음식물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③ 기타 물질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① 과로 및 격렬한 운동 13. 침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연 하(삼키는 기능) 장해 또는 정신신경 장해 상태가 있는 사람의 호흡기관 폐쇄 또는 질식을 일으키는 식품의 흡 입 및 섭취 ② 호흡기관의 폐쇄 또는 질 식을 일으키는 기타 물체의 흡입 및 섭취	E 910~E 915 (E 912)	“보조분류”에 의거 13 항목 ②③을 독 립 항목으로 설정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중에 당하는 환자의 재난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E 870~E 876	“보조분류”에 의 거 조정
① 질병의 진단목적 ② 질병의 치료목적	① 질병의 진단목적 ② 질병의 치료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 해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E 969	
16. 법적 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 다”)	16.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 한다”)	E 970~E 978	전염병은 불의의 사 고로 볼 수 없는 질 병이므로 삭제
17.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7.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79~E 990	
18.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 종에 규정한 질병			

등급	나. 장해등급 분류표	등급	나. 장해등급 분류표
1 급	<b>신 체 장 해</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li> <li>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li> <li>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 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 호를 받아야 할 때</li> <li>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 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li> <li>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 거나 완전영구히 사용되지 못하게 된 때</li> <li>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li> </ol>	1 급	<b>신 체 장 해</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li> <li>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li> <li>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 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li> <li>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li> <li>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 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li> <li>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li> </ol>

<p>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8.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발목 이상을 잃었을때</p> <p>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된때</p> <p>2. 열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p> <p>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p> <p>4.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때</p>	<p>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때</p> <p>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3.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4급의 4부터 8까지 신체장애가 발생 되었을때</p> <p>4.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때</p>	<p>분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개호로 구분</p> <p>윗문장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p> <p>제4급 1, 2, 3호 신설에 따라 순연</p>
<p><b>3급</b></p> <p>1. 한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때</p> <p>2. 한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3. 한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4.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때</p> <p>5. 10발가락을 잃었을때</p> <p>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p>	<p><b>3급</b></p> <p>1. 한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때</p> <p>2. 한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3. 한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4.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손가락을 잃었을때</p> <p>5. 10발가락을 잃었을때</p> <p>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p>	<p>용어의 국어화</p>

金炳極 外 : 保險約款의 醫學的 檢討 (II)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를 영구히 남겼을 때	
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팔의 3대관절중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li> <li>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li> <li>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 되었을 때</li> <li>한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li> <li>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li> <li>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li> <li>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눈에 뚜렷한 시력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li> <li>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li> <li>중추신경계, 정신 또는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제한을 받을 때</li> <li>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li> <li>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li> <li>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 되었을 때</li> <li>한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거나 첫째 및 둘째 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li> <li>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첫째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li> <li>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li> <li>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li> </ol>	<p>1급장애 보다는 장해상태가 약하나 종신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1, 2, 3호 신설</p> <p>용어의 국어화</p> <p>용어의 국어화</p>
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li> <li>한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li> <li>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li> </ol>	<p>팔 다리의 기능장애 상태에 따른 보장을 위한 보완책으로 1, 2호 신설</p>

Kim, Byung Kuck, et al. : Medical Approach to the Grades of Partial Disability and  
Disability under Insurance Policy (II)

<p>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3.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4. 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 히 상실하였을때</p> <p>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p>	<p>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p> <p>3.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거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때</p> <p>4. 한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5.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6.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 히 남겼을때</p> <p>7.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상실하였을때</p> <p>8.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p>	<p>용어의 국어화</p> <p>2급장해보다는 장 해상태가 약하나 청 력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6호신설</p> <p>팔 다리의 기능장애 상태에 따른 보장을 위한 보완책으로 1, 2, 3호 신설</p>
<p><b>급</b></p> <p>1.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2. 한손의 모지 및시지이외의 한손가락 또는 두손가락을 잃었을때</p> <p>3.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때</p> <p>4.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b>6 급</b></p> <p>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p> <p>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p> <p>3.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때</p> <p>4.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첫째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5. 한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p>	

金炳極 外 : 保險約款의 醫學的 檢討 (II)

<p><b>(주 기)</b></p> <p>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p> <p>2. “시력을 잃은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p> <p>3. “말 또는 씹어먹는것의 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과의 경우를 말한다. 1) 어음구성기능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p>	<p>6.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발가락을 잃었을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p> <p><b>(주 기)</b></p> <p>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 한것을 말한다.</p> <p>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3. “시력을 잃은것”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p> <p>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p> <p>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과의 경우를 말한다. 1) 말파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ㅌ) 구개음(ㅅ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p>	<p>었을때</p> <p>증후신경계, 정신, 복부장기등의 장해로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을 경우에 대한 보장을 도입함으로서 “평생간호”와 구분하기 위하여 신설</p> <p>용어의 평이화</p> <p>고도장해 보다는 낮은 장해 상태에 대한 보장을 도입함으로서 고도장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신설</p> <p>고도장해가 아닌 장해 상태의 도입에 따라 조정</p> <p>문장의 평이화</p>
----------------------------------------------------------------------------------------------------------------------------------------------------------------------------------------------------------------------------------------------------------------------------------------------------------------------------	-----------------------------------------------------------------------------------------------------------------------------------------------------------------------------------------------------------------------------------------------------------------------------------------------------------------------------------------------------------------------------------------------------------------------------------------------------------------------------------------------------------------------------------------------------------------------------------------------------------------------------------------------	-----------------------------------------------------------------------------------------------------------------------------------------------------------------------------------------------------------------------

Kim, Byung Kuck, et al.: Medical Approach to the Grades of Partial Disability and  
Disability under Insurance Policy (II)

<p>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p> <p>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p> <p>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 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4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p> <p>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로 했을때 <math>1/6(a+2b+2c+d)</math>의 값이 80 덧벨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2) 뇌언어 중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p> <p>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p> <p>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p> <p>물과 미음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p> <p>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p> <p>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7.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p> <p>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 (청력 검사 단위)로 했을때 <math>1/6(8+26+2C+d)</math> 값이 80 데시벨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8. “청력에 뚜렷한 장해”</p> <p>위의 방법에 따른값이 60데시벨 이상 (<math>40cm</math>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용어의 평이화</p> <p>문장의 단문화</p> <p>고도장해상태 보다 낮은 장해상태에 대한 보장을 도입함으로서 고도장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신설</p> <p>청력을 완전히 잃은 것보다 낮은 청력장애 정도의 보장을 도입함으로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신설</p>
-------------------------------------------------------------------------------------------------------------------------------------------------------------------------------------------------------------------------------------------------------------------------------------------------------------------------------------------------------------------------	-----------------------------------------------------------------------------------------------------------------------------------------------------------------------------------------------------------------------------------------------------------------------------------------------------------------------------------------------------------------------------------------------------------------------------------------------------------------------------------------------------------------------------------------------------------------------------------------------------------------------------------------------------------------------------------------------------------------------------------------------------------------------	-----------------------------------------------------------------------------------------------------------------------------------------------------

<p>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이란 비연골 1/2 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자의 가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 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냄새 맡는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문장의 단문화 및 평이화</p>
<p>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 관절 및 손목다리는 고관절 무릎 관절 및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p>	<p>10.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 [팔은 견관절 (어깨),주관절 (팔꿈치),완관절 (손목)], 다리는 고관절(골반), 슬관절(무릎), 족관절(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p>	<p>문장의 단문화</p>
<p>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p>	<p>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p>	<p>부위표현의 전문용어 통일 및 평이한 용어 의 설명삽입</p>
<p>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p>	<p>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경추(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흉추(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p>	<p>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낮은 팔다리 장해정도의 보장을 도입함으로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신설</p>
		<p>문장의 단문화</p>
		<p>문장의 단문화 평이한 용어의 설명 삽입</p>

Kim, Byung Kuck, et al. : Medical Approach to the Grades of Partial Disability and  
Disability under Insurance Policy (II)

<p>8. “손가락의 장해”</p> <p>가. “손가락을 잃은것” 이라 함은 모지는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 관절이상을 잃은것을 말한다.</p> <p>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 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절간 관절 모지는 말절의 1/2 이상을 잃은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모지는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13. “손가락의 장해”</p> <p>가. “손가락을 잃은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 관절이상을 잃은것을 말한다.</p> <p>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 관절(첫째 손가락은 말절골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첫째 손가락은 지절간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문장의 단문화 용어의 평이화</p> <p>용어의 평이화, 문장의 단문화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p>
<p>9. “발가락의 장해”</p> <p>가. “발가락을 잃은것” 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것을 말한다.</p> <p>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 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14. 발가락의 장해</p> <p>가. “발가락을 잃은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것을 말한다.</p> <p>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 관절이상을 잃은 경우이거나 중족지절 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p>문장의 단문화</p> <p>문장의 단문화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p>
<p>10. 신체의 동일부위</p> <p>가. 한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견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p> <p>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무릎관절이하)를</p>	<p>15. 신체의 동일부위</p> <p>가. 한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어깨)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p> <p>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골반)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p>	<p>용어의 평이화</p>

金炳極 外 : 保險約款의 醫學的 檢討 (II)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  
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  
라 한다.  
마. 장해 등급표중 제1  
급의 5, 6, 7 또는 제8  
제2급의 1, 2, 3 제3급  
의 5 또는 제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 한팔과 한다  
리 10손가락 또는 발가  
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  
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  
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 (목  
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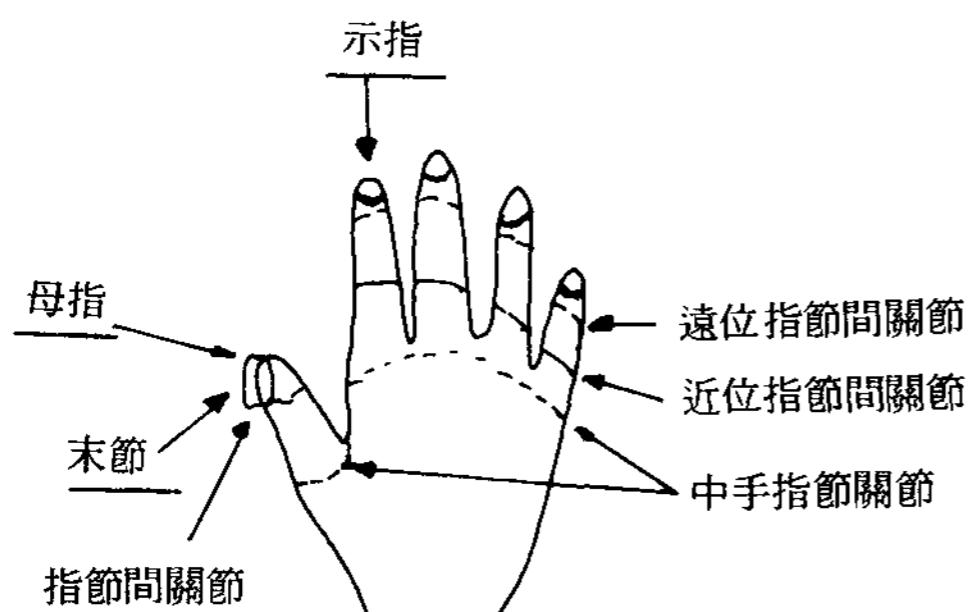
마. 장해 등급표중 제1급의 5,  
6, 7, 8 또는 9, 제2급의 1, 2,  
3 제3급의 5 또는 제4급의 9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 손  
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  
일부위라 한다.

평이한 용어의 설명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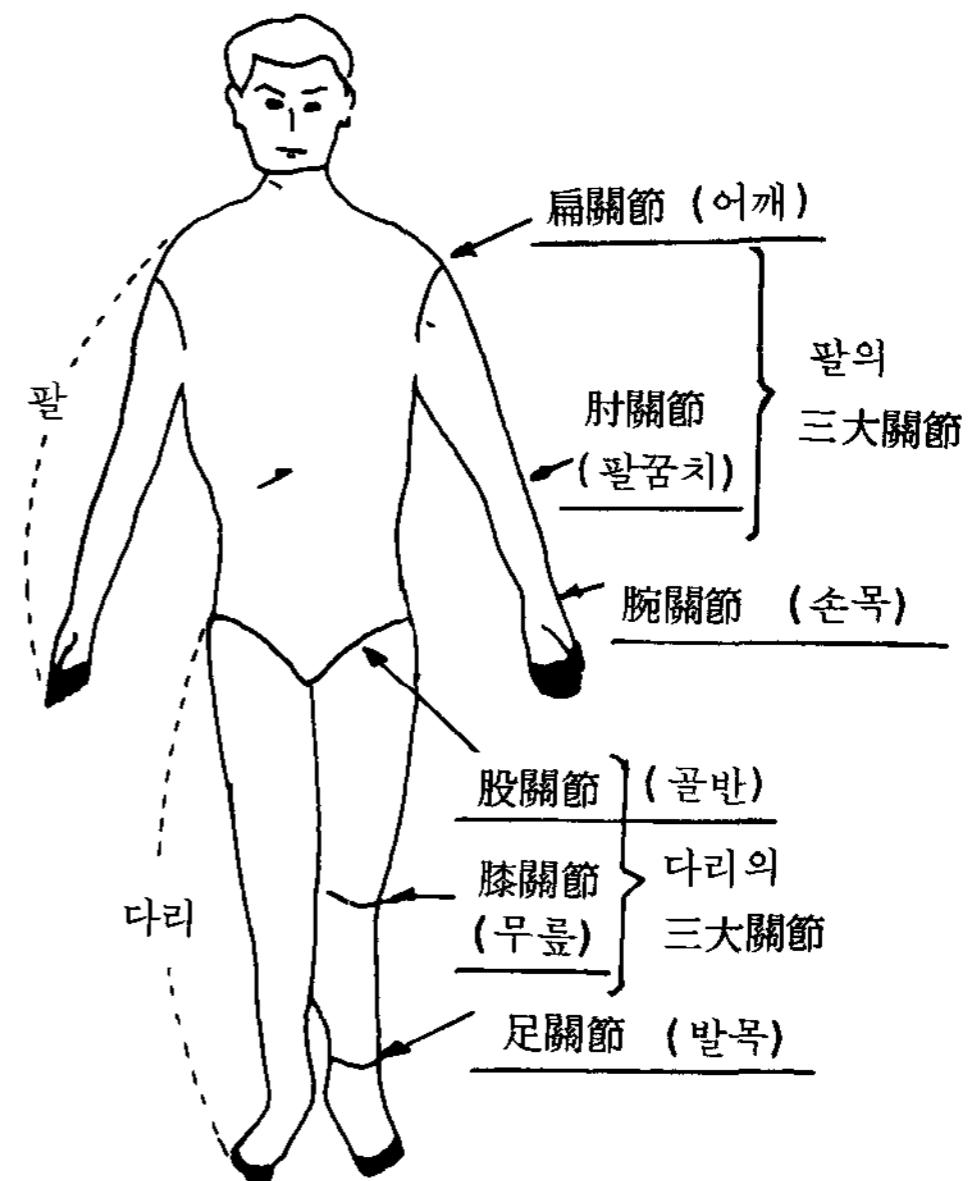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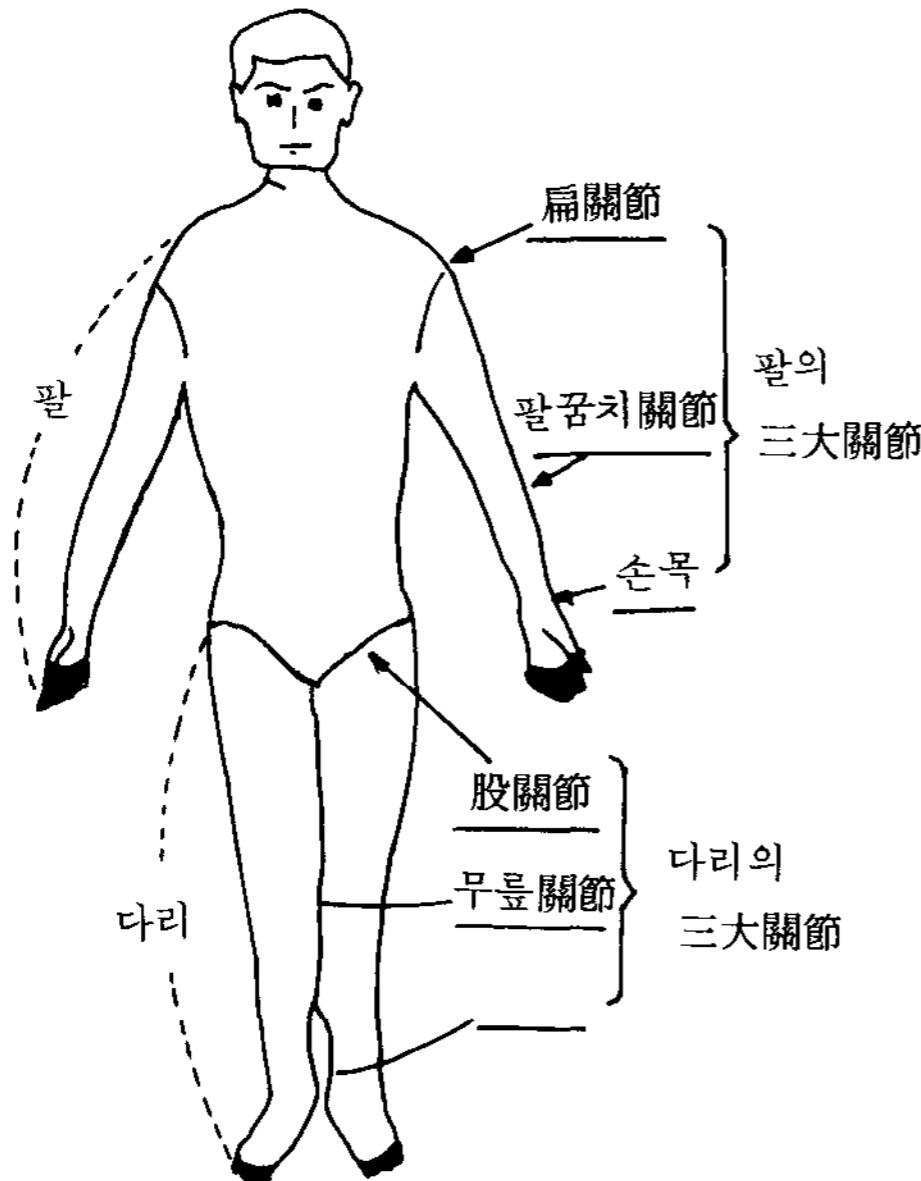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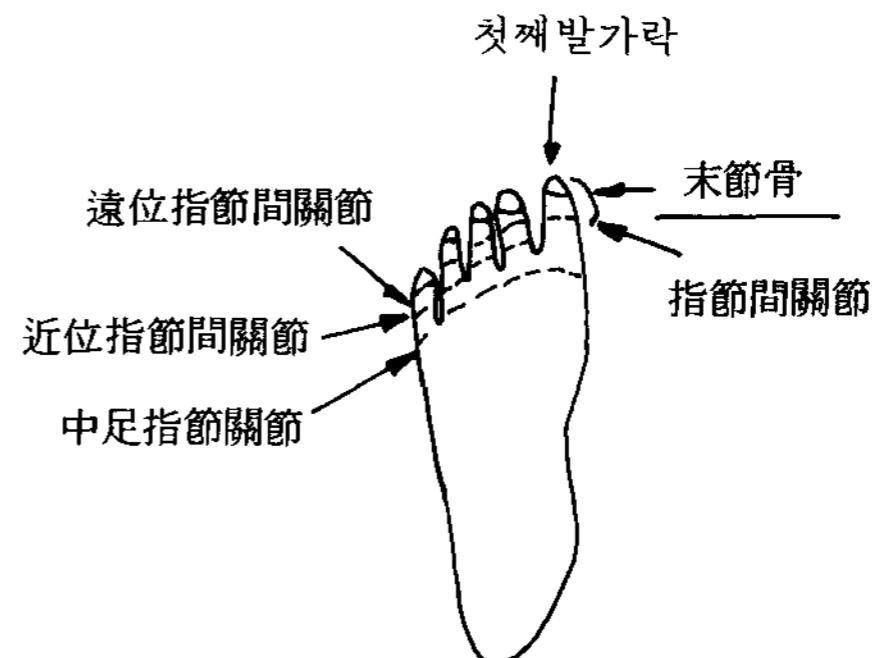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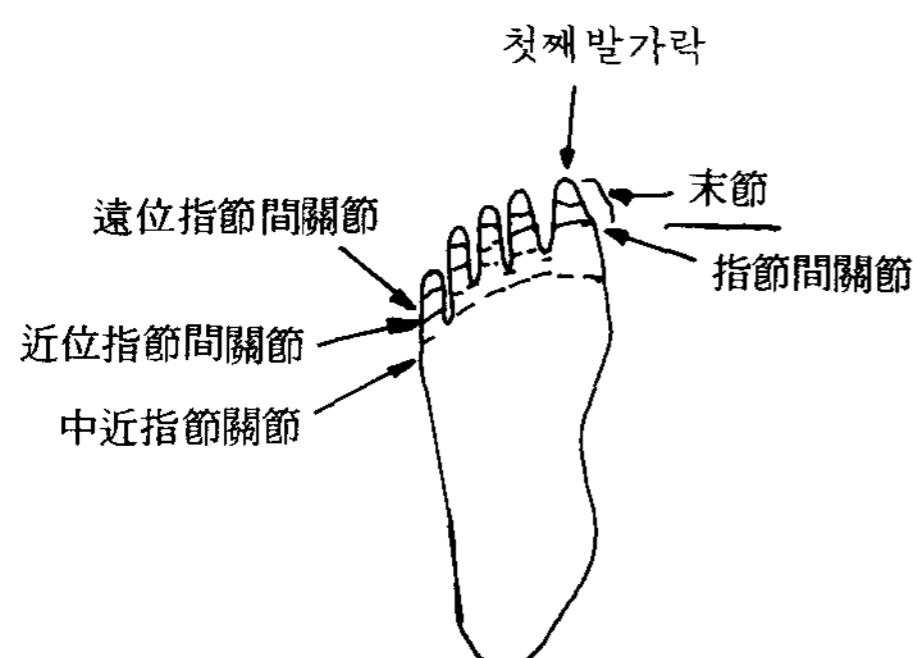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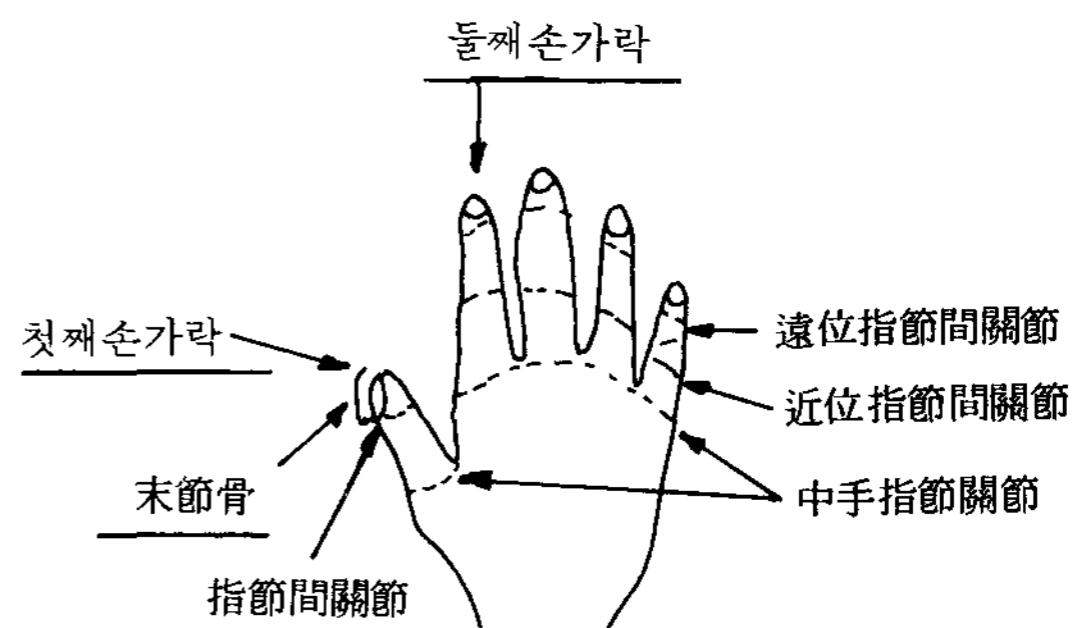
보장보험의 확대에 따  
라 순연

신체부위설명도

현행(임의기재)



개정(안)의무기재



신체부위의 설명도를 해당약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함

- 용어의 평이화
-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
- 전문용어의 통일사용 및 평이한 용어의 설명 삽입